#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83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 최수진 · 임이자 · 이상휘

성일종 · 신성범 · 구자근

박준태 · 김선교 · 조지연

최형두 · 윤재옥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되었음.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의 울타리로서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등 전반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사전보호 조치를 위해서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장이 성폭력 및 중대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등의 중요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 에게 알리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긴밀 하게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 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 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 법률 제 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한다"를 "하며, 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처분 사유를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성폭력 및 위급한 신체적 폭력(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사안 등),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등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 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 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수집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정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9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u>한다</u> .	<u>하며, 제1</u>
	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를 하는 경우 그 처분 사유를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
	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
	<u>다.</u>
① ~ ① (생 략)	① ~ ① (현행과 같음)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학교의 장은 성폭력 및 위
	급한 신체적 폭력(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사안 등), 가해자
	가 성인일 경우 등 경찰의 협
	조가 필요한 학교폭력이 발생
	한 경우에 한하여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
	찰청장은 제20조의6에 따른 학

④ (생 략)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현행과 같음)
  -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수집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정보를 소 속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